



MINI Market Report

국가	멕시코
제품	숙취해소음료

주관사 :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CONTENTS

I. 멕시코 통관 정보	1
1. 관세 및 기타 세금	1
2.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	4
II. 멕시코 검역 정보	10
III. 멕시코 라벨링 정보	13

※ 참고자료

I 멕시코 통관 정보

1. 관세 및 기타 세금

☐ 관세율

HS CODE	품명	관세율
1603.00	육 · 어류 · 갑각류 ·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	20%

☐ 관세 및 부가가치세

- 멕시코 상품분류는 '88 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
- 상품 분류는 22 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, CAPITULO는 다시 PARTIDA,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12,116개의 FRACCION으로 세분됨
- 2014년 9월 기준 12,116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음
- 최혜국에 대한 단순 평균관세율은 5.2%, FTA 및 각종 경제협정 체결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.95%, 산업 특혜 프로그램을 적용한 공산품 가중치 평균 관세율은 3.4%임
-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, 3, 5, 10, 13, 15, 18, 20, 23, 35% 10단계로 되어 있으며,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
 - 0%: 서적과 같이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품목, 마길라도라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
 - 3~5%: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, 부품
 - 10~13%: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
 - 15~20%: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

- 23~35%: 가죽, 신발,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
- 참고로 멕시코는 HS CODE 8 단위를 사용하고 있음. 따라서 정확한 HS CODE를 위해서는 멕시코 관세 책자를 참고해야 함
-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(SIAVI)에서 HS CODE 별로 FTA 체결국 및 미 체결국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나 동 사이트는 업데이트가 늦은 편이므로 DIA 사이트에서 비 FTA 국가(한국)에 대한 최근관세를 재확인해볼 수 있음
- DIA 사이트는 스페인어판은 유료임. 영어판은 관세검색 내용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, 무료정보인 관계로 FTA 체결국 관세율, 반덤핑 관세 등 상세내역이 제공되지는 않음
- 경제부 : <http://www.economia-snci.gob.mx:8080/siaviWeb/siaviMain.jsp>
- DIA : <http://www.diaenlinea.com.mx/>, <https://www.datacomex.com.mx/>
- 스페인어를 선택한 후에, 왼쪽 메뉴 중에 TAFITA ARANCELARIA MEXICANA ENLINEA를 선택하고, HS CODE를 넣고 검색하면 수입 관세가 나오는 부분이 FTA 비 체결국, 즉 한국에 해당하는 관세임

□ HS CODE별 종합 관세율

- 멕시코 관세의 종류는 일반관세와 자유무역협정(FTA)이 체결된 국가에 적용되는 특혜 관세가 있음
- 멕시코는 미국, 캐나다와 NAFTA(북미자유무역협정), EU, 일본, 이스라엘, 칠레, 코스타리카등과의 쌍무자유무역협정, 베네수엘라, 콜롬비아와의 G3협정 등 수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
-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조항에 의거, 적용되는 특별관세, 보조금 지급에 대해 부과되는 상계관세, 덤핑관정을 받은 품목에 적용되는 덤핑관세 등이 있는데, 상계관세와 덤핑 관세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상계쿼터(Cuota Compen - satoria)라고 불림
- 한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무역협정(FTA)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에 대

한 농림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최저 3%에서 최고 30%까지 다양한데, 상당 품목이 30% 이상의 고 관세를 적용 받고 있음

□ 관세법 위반 시 제재조치

- 통상적인 관세법 미 준수는 단순 통관거절, 범칙금 납부, 통관사의 면허박탈 등이 있으며, 농수산물 수입 시 관세법을 위반할 경우 일반적인 제재 사례는 다음과 같음
- 농산물 위생법 위반 : 최저 임금의 50~2만배 범칙금 납부
- 식품 위생허가 없이 통관할 경우 : 최저 임금의 2,000~2만배의 범칙금납부
- 그리고 마약 반입시도 등, 범죄적 성격의 경우는 최저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됨

□ 부가가치세

- IVA는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에 적용되는 세금임
- 수익 전문가가 프랑스에서 발생대로 IVA는 판매세의 현대적인 상응해야 한다고 1966년 9월에 선언, IVA을 적용하는 최초의 시도가 열림
- 2010년 일반 부가가치세(VAT) 세율은 16%임
- 경계 지역(즉, 미국 국경, 또는 벨리즈와 과테말라)을 제외한 모든 멕시코를 통해 부가가치세11 %가 적용됨
- 주요 면제 책, 음식, 진료 등 일부 서비스는 면제됨

2.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

□ 멕시코의 통관

- 멕시코로 수입된 물품은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통관절차를 밟게 됨
- 창고료는 항공 및 육상 운송 제품은 2일간은 부과되지 않으며, 해상 운송은 닻새 동안 부과되지 않음
- 그러나 일부서비스 수수료(servicios de manejo)는 지급하게 됨
- 세관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이 재수출용으로허가를 받으면 관세 부과 없이 재수출할 수 있음
- 그러나 일단 통관절차가 끝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하여 멕시코 법령에 따른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함
- 화물 검사는 통관 대에 신호등이 부착되어 있어 통관 시 통관사 또는 화주가 신호등의 버튼을눌러 적색 불이 들어왔을 때만 실시함
- 적색 불의 확률은 보통 10% 수준이나 한국 등 아시아산수입물품은 품목에 따라 거의 100%에 가까워서 화물검사가 불가피하다고 간주해야 함
- 통관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4~5시간 정도이나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는 1일 정도가 추가로 소요됨
- 통관 시 구비서류로는 수입면장(PEDIMENTO DE IMPORTACION), 상업송장(factura comm. Ercial), 배짐증권, 수입허가서(수입허가품목인 경우), 원산지증명서, 기타 제증명서(필요한 경우, 예를 들어 의약품은 보건부의 허가서 필요) 등이 있음

□ 통관 절차도

- 통관사 선정 → 수입면장 작성 → 제세금 납부 → 세관의 서류검토 → 화물검사 여부 결정 → 화물 검사 → 화물 인수

□ 수입 통관 절차

- 멕시코로 수입된 물품은 세관창고에 반입되어 통관업무가 실시되며, 관세 및 기타 제세가 부과됨
- 창고료는 수입품 반입 15일 이후부터 부과되고, 반입 된지 90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반출해야 하는데, 그렇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, 수입물품의 법적 소유권이 국고로 넘어감
- 세관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이 재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,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
- 그러나 일단 통관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되어 재수출시 수입관세가 환급되지 않으며, 멕시코 수출법령에 따른 수출절차를 밟아야 함
- 한편 통관은 송장금액이 1,000 달러 이하인 경우, 화주 본인이 간이통관을 실시할 수 있으나, 1,000 달러 이상은 통관사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함
- 또한 대부분의 경우 화물이 선편으로 도착하는데, 세관에서 인정한 일부 수입업체(전체의 1% 미만)를 제외하고는 최종 목적지가 멕시코시티일지라도, 멕시코시티에서 통관할 수 없고, 항구에서 일단 통관한 후 멕시코시티로 운송하기 때문에 항구에 주재하는 통관사를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수 있음
- 통관수수료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, 통상 상품가격의 0.08% 정도

□ 통관 비용 및 소요시간

- 멕시코 통관사를 통해 화물을 찾을 때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크기에 상관없이 인보이스 금액의 0.45%에 해당하는 통관비와 서비스료 1,500~3,000페소가 소요됨
- 부산항에서 선적, 태평양의 만사니요(Manzanillo)항에 도착하는 경우 직항은 최단 14일이 소요되며 일본, 미국 등을 거쳐서 오는 경우는 최장 30일까지 소요됨

□ “아시아 산 제품 대상 자동수입신고제도(API)” 폐지(1998.8.27일부터 발효)

- 2008년 6월 이전에는 섬유, 의류, 장난감, 공구류 등 74개 품목에 대한 아시아 상품 수입상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멕시코 영토 내에 상륙하기 전에 경제부에 수입 신

고를 끝내야 하며, 경제부가 발행해 주는 수입 신고필 확인서(ACUSE DE RECIBO) 사본을 수입면장(PEDIMENTO DE IMPORTACION)과 함께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 할 수 있었음

- 해당 제도는 중국,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특별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는데 2008년 6월에 통관 간소화 조치의 목적으로 아시아 산 섬유, 의류, 장난감, 공구류에 대한 특별 원산지 규정이 폐지되고, 일반 원산지 규정을 받게 되었음
- 따라서 한국산 섬유나 의류에 적용되었던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 철폐된 것으로 볼 수 있음

□ 수입 신고 및 사전 허가제

- 멕시코 농림수산물 및 식품수입에 있어서 “사전 수입 승인제(Permiso)” 및 “사전수입신고제(Aviso)”로 구분 운영하고 있음

○ 사전수입 승인제(Permiso)

- 사전수입 승인제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여, 민감 품목을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
- 수입업자는 사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건부에 제출, 승인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한 후 주한 멕시코영사관의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는데, 승인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 - 판매허가서(Certificado de Libre Venta) / 우리나라식약청발급
 - 성분증명서(Certificado de Analisis) / 우리나라식약청발급
 - 상업송장(Commercial Invoice)
 - 샘플(라벨 부착 필수)
 - 샘플 라벨에는 제품번호(lote) 및 유효기간 반드시 표기해야 함
- 참고로 상기 필요서류를 제출할 때, 일반 시중은행에 인지대 150달러를 납부한 후, 납부영수증을 함께 제출

<사전 수입 승인 대상품목(HS CODE)>

0105.1101	/	0207.1101	/	0207.1201	/	0207.1301	/	0207.1302	/	0207.1399	/	0207.1401	/
0207.1403	/	0207.1499	/	0207.2401	/	0207.2501	/	0207.2601	/	0207.2602	/	0207.2699	/
0207.2701	/	0207.2703	/	0207.2799	/	0207.3201	/	0207.3301	/	0207.3599	/	0207.3699	/
0209.0001	/	0209.0099	/	0402.1001	/	0402.2101	/	0402.9101	/	0406.1001	/	0406.3001	/
0406.3099	/	0406.9003	/	0406.9005	/	0406.9005	/	0406.9006	/	0406.9099	/	0407.0001	/
0407.0003	/	0701.9099	/	0713.3399	/	0806.1001	/	0901.2101	/	0901.2201	/	0901.9001	/
0901.9099	/	1001.1001	/	1001.9001	/	1001.9099	/	1003.0002	/	1003.0099	/	1005.9033	/
1005.9004	/	1005.9099	/	1008.2011	/	1107.1001	/	1107.2001	/	1203.0001	/	1212.9902	/
1501.0001	/	1516.1001	/	1521.1001	/	1704.1001	/	1704.9099	/	1806.1001	/	1806.1099	/
1806.3101	/	1806.3201	/	1806.9099	/	2101.1101	/	2101.1199	/	2101.1201	/	2401.1001	/
2401.1099	/	2401.2001	/	2401.2099	/	2401.3001	/	2402.1001	/	2402.2001	/	2402.9099	/
2403.1001	/	2403.9101	/	2403.9199	/	2403.9999							

○ 사전수입 신고제(Aviso)

- 수입 신고제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은 사전에 멕시코 보건부(Secretaria de Salud)에 한국의 식약청에서 발급하는 “판매증명서(Certificado de Venta Libre)” 1부와 “성분증명서(Certificado de Analisis)” 를 제출하여 서류검사를 거친 후,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서류통과확인서를 발급함
- 그 다음 물건이 항구 또는 국경에 도착하였을 때, 서류만 심사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는 바로 통관되며, 통관 후 수입업자의 창고에 물건이 도착한 후, 20일 이내에 보건부 요원이 직접 창고에 나와서 수입 신고제 품목의 라벨,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함
- 참고로 수입업자는 제품을 통관하여 창고에 도착한 후, 바로 제품판매를 시작할 수 있지만, 보건부 직원이 통관 후 20~30일 내, 불시에 파견되어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, 각 제품의 최소한 1개 이상의 샘플은 남겨두어야 함
- 만약 제품검사 후, 사전 신고된 제품과 상이하거나 제품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, 범칙금이 부과되며 최악의 경우 수입업자의 수입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음. 참고로 수입 면허 취소 시, 다시 복구는 불가능

<사전 수입 신고제 대상품목 리스트(HS CODE)>

Group I 대상국가	한국, 홍콩, 말레이시아, 마카오, 태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파키스탄, 인도, 중국, 북한, 스리랑카, 베트남, 대만
대상품목 (HS CODE)	0804.3001 / 1511.1001 / 1511.9099 / 1513.1101 / 1513.1999 / 1513.2101 / 1513.2999 / 1604.1401 / 1604.1402 / 1604.1403 / 1604.2002 / 2008.2001 / 2815.1201 / 2847.0001 / 3903.1902 / 3903.1999 / 3903.9005 / 3903.9099 / 3904.1003 / 3904.1004 / 3904.1099 / 3920.5901 / 4011.5001 / 4013.2001 / 4412.1301 / 4412.1399 / 4412.2201 / 5208.1101 / 5208.1901 / 5208.2101 / 5209.5999 / 5210.3101 / 5407.6102 / 5407.6199 / 5407.7201 / 5407.8101 / 5407.8299 / 5408.1002 / 5408.2199 / 5513.1101 / 5516.1401 / 6106.2099 / 6109.9001 / 6115.9201 / 6201.1399 / 6203.4299 / 6203.4399 / 6204.4399 / 6204.4499 / 6204.6201 / 6204.6399 / 6205.2099 / 6206.4099 / 6215.1001 / 6402.2001 / 6402.9101 / 6402.9901 / 6402.9999 / 6405.9001 / 6911.1001 / 6911.9099 / 6912.0001 / 6912.0099 / 7013.2903 / 7013.3903 / 7013.9999 / 7323.9403 / 8301.4001 / 8712.0002 / 8712.0099 / 9505.1001 / 9505.1099
Group II 대상국가	한국, 러시아, 일본, 말레이시아, 체코, 불가리아, 인도네시아, 카자스탄, 인도, 싱가포르, 남아프리카(공), 유고슬라비아, 루마니아, 우크라이나
대상품목 (HS CODE)	3102.1001 / 3102.2101 / 4002.1902 / 7208.3701 / 7208.3801 / 7208.3901 / 7208.5101 / 7208.5201 / 7209.1601 / 7209.1701 / 7210.1201 / 7210.4910 / 7210.7001 / 7213.9101 / 7213.9999 / 7216.3299 / 7304.1001 / 7304.2999 / 7305.1101

□ 통관 시 주의사항

① 아시아 산 통관강화로 서류준비 철저 필요

- 멕시코 세관의 수입상품검사는 통관사가 세관에 설치된 신호등의 버튼을 눌러 파란 불이 켜지면 세관 검사가 면제되고, 빨간 불이 켜지면 검사하는 무작위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나, 한국을 포함한 중국 대만 등, 아시아 산 제품에 대해서는, 거의 예외 없이 빨간 불이 나오도록 하고 있어 통관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
- 게다가 2002년부터는 높은 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, 많은 의류/신발 수입업체들이 원산지를 중국에서 한국/홍콩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산으로 조작하여 수입되는 사례가 빈발하자, 멕시코 세관에서는 무조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강화하고 있어, 많은 업체들이 통관이 지연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가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② 유능한 통관사 고용 필요

-
- 멕시코의 세관은 서비스가 좋지 않기로 유명하고, 세관 관리들이 자질이 낮아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특히 많음
 - 따라서 같은 상품인 경우에도 세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통관 기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, 능력 있는 통관사를 고용하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음
 - 게다가 농산물이나 식품수입의 경우 특히 수입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, 이 분야 전문 통관사 고용이 매우 중요함

II 멕시코 검역 정보

□ 농림수산물 위생증명서 발급제

- 농림수산물(SAGARPA)의 “위생증명서(Certificado Fitosanitario)” 발급을 통해 각종 병균을 갖고 있을 수 있는, 다음과 같은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있음

□ 채소, 과일 및 그 가공물

- 채소, 과일 및 그 가공물 수입 시,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“국제위생증명서(Certificado Fitosanitario Internacional)”와 검사증명서를 구비해야 함
- 그리고 채소, 과일 등은 제 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, 원산지 국가에서 멕시코로의 직수입만을 허용하고 있음. 역시 제3국으로 재 반출 역시 금지되어 있음
- 한편 파종용이 아닌 일반 곡물 및 종자수입의 경우 필요한 위생요건은 다음과 같음
- 원산지 국가 해당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“국제위생증명서(Certificado Fitosanitario Internacional)” : 제품의 선적지 및 원산지 국가명
- 멕시코 첫 관문 세관의 위생검사
- 식물위생국(Dirección General de Sanidad Vegetal)에서 승인한 위생검사 실험실에 수입물품의 샘플 발송.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

□ 식품수입 검역·검사 절차 및 제도

- 멕시코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농림수산물에 대한 검역은 농림수산물부(SAGARPA) 정식 파견 직원이 멕시코 첫 관문지역에서 실시함
- 해상운송의 경우 검역은 하역 전에 실시하며, 육상 운송의 경우 멕시코에 들어오기 전에 수입물품뿐만 아니라, 운송차량 및 관련서류를 검사함
- 농림수산물부 직원은 수입물품의 샘플을 검사하여, 만약 조금이라도 병균이 채취될 경우, 수입물품은 멕시코에 반입될 수 없으며, 즉시 반출하거나 파괴해야 하는데, 이때

선택은 수입자 또는 책임자에게 선택하도록 함

- 이때 파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 또는 책임자가 부담함
- 수입식품이 “사전 수입승인제(Permiso)” 대상품목일 경우, 세관에 도착 후 샘플검사에 최고 20일의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, 식품상태 보전을 위해 특수냉장 또는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함
- 이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며, 실제 많은 수입업자들이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올바른 라벨 부착임
- 라벨 또는 포장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관은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15일을 추가로 부여하는데, 그 기간 내에도 이를 정정하지 못하면, 수입자의 수입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다고 함. 따라서 식품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라벨 부착임

□ 검역 제도

- 멕시코 위생법은 “연방 도량형 및 표준화법(Ley Federal sobre Metrologlay Normalizacion)” 및 “연방 식물 위생법Ley Federal de Sanidad Vegetal)”에 근거하고 있음
- 현재 각종 식물수입은 멕시코 농림수산부((Secretaria de Agricultura, , Ganaderia, Desarrollo Rural, Pesca y Alimentacion / SAGARPA) 산하 “식물위생국(Direccion General de Sanidad Vegetal / DGSV)” 이 관장하고 있으며, 각 멕시코 첫 관문 지역에서의 검역은 “위생검역국(Direccion General de Inspeccion Fitosanitaria / DGIF)” 에서 담당하고 있음
- 동 위생 검역국에서 병균 등으로부터 무해하다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
- 아울러 아래 품목은 멕시코에 유입될 때, 멕시코 표준규격제도(NOM) 또는 식물위생국(DGSV)에서 발행하는 “위생증명서(Hojas de Requisitos Fitosanitarios/HRF)”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멕시코 영토유입 시 농림수산업 산하 위생 검역국(DGIF)의 검역에서 통과되어야 함
- 동 검역에 통과되었을 때, 위생검역국은” 위생증명서 Certificado de ImportaciIn

Fitosanitario)"를 발급

- 수입자는 수입신고서(Pedimento Aduanal)와함께 세관에 제출함
- 한편 멕시코 세관은 각종 세균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고, 수입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, 원산지 국가에서의 검역제도를 도입했음
- 즉 원산지 국가에서 해당국가의 협조 하에 멕시코 특별검역원을 파견 검역을 사전에 하는 경우도 있음

III 멕시코 라벨링 정보

□ 라벨링 규정

- 멕시코는 제조 및 상업적 유통정보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, 라벨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
- 라벨작성은 NOM-004-SCFI-1993 해당품목, NOM-020-SCFI-1993 해당품목 및 기타품목의 세 가지로 구분
- 1996년 7월 24일부터 적용되는 라벨링 예시는 다음과 같음

라벨링 요건품목 (2,893개 HS CODE 해당제품)	HS CODE별 대분류	품목 수	분야	주요 대상 품목
	00류	99개	동, 식물	차, 유제품 등
	10류	133개	곡물, 식품류	과자류, 빵, 다이어트 식품류
	20류	166개	조제 식품류	담배, 주류, 음료 등

- 식품(알콜 음료 제외) 및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드시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함
- 식품의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
 - 제품명
 - 성분(ingredients) : 성분표시는 함유량이 많은 순으로 명기함. 제품에 포함된 물의 양도 함께 표시해야 함. 단 제조과정에서 증발하는 물은 포함시킬 필요 없음
 - 첨가물 :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모든 성분에 대해 표기해야 함
 - 무게(NOM-030-SCFI)
 - 제조업체 명
 - 업체 명, 납세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 등 제품의 제조를 책임진 제조업체 정보를 명기해야함. 제조업체에 대한 자료는 멕시코 경제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. 경제부는 동 자료를 소비자가제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제공할 의무가 있음
 - 수입업체 명 :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와 동일하게 업체명, 납세번호(RFC), 주소 등을

명기함

- 원산지 국명 : 제품의 원산지 표기는 “Hecho en ... (Made in ...)” , “Producto de ... (Product of ...)” , “Fabricado en ... (Manufactured in ...)” 등으로 표시해야함
 - 제품 번호 : 모든 제품에는 일련의 제품번호를 명기해야 함
 - 유효기간 : 해당법령에 따라 정확한 유효기간을 명기해야 함
 - 그 외에 제품의 상태를 보장할 수 있는 보관방법도 함께 표시함. 예를 들어서 “냉동보관(Conservese en congelacion)” , “냉장보관(ManteMngase en refrigeracion)” , “해동된 경우 재냉동불가(Una vez descongelado no debera volverse a congelar)” , “개봉 이후 냉장보관 요망(Una vez abierto, conservese en refrigeracioen)” 등으로 보관방법을 제시함
 - 영양정보, 적합한 소비시기, 복용(식용) 방법 등 : 이는 추가정보로 선택 표기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님
- 한편 라벨링 검증 신청 시, 라벨링 요건품목일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입 신청해야 함
- 라벨링 상업정보 검증신청서(Solicitud de Servicios de Verificacion de Informaciodyn Comercial)
 - 라벨링 검증 신청계약서(Contrato de Prestacion de Servicios de Verificacion de Etiquetado)
 - 회사정관(Acta Constitutiva) 사본
 - 연방납세자등록증(Cedula de RFC/사업자등록증 사본)
 - 안전검사 신청 시 또는 라벨링 검사신청 시, 공히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(Carta Poder) 추가 필요함
- 끝으로 라벨은 제품이나 포장, 어느 곳에 붙여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함
- 통상 제품 또는 포장지의 뒷면에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
- 보통은 수입업자가 주문 시, 수출업자에게 라벨샘플을 제공해주고 그대로 부착하도록 요구하나,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는 수입업자가 통관 전에, 현지 보세창고에서 라벨을 부착하는 사례도 종종 있음

□ 원산지 규정

-
-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(FTA) 회원국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(9C/O)를 요구하고 있음
 - 따라서 아시아국가 13개국, 즉 방글라데시, 키프로스, 한국, 필리핀, 홍콩, 인도, 인도네시아, 마카오, 말레이시아, 파키스탄, 싱가포르, 스리랑카, 태국 및 WTO 비회원국산 신발, 섬유,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
 - 참고로 멕시코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CPO(Certificado de Pais de Origen), ANEXO III 또는 Hard Certificate라고 함
 - 한국 원산지증명서 제출요령
 - 한국 등 아시아 13개 국가
 - 일반 품목 : 원산지 설명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대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됨
 - 별도고시 품목 :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멕시코 정부에 통보 → 별도 게시 원산지증명서 작성 → 원산지증명서 발급
 - 13개 대상 국가 : 방글라데시, 키프로스, 한국, 필리핀, 홍콩, 인도, 인도네시아, 마카오, 말레이시아, 파키스탄, 싱가포르, 스리랑카, 태국

※ 참고자료

- DIA : <http://www.diaenlinea.com.mx/>
-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: www.qia.go.kr
-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정보 : <http://www.kati.net/>
- 관세청 : www.customs.go.kr